

미국 농업부문의 FTA 협상사례와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朴芝賢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미국은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 모두 상대국에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한 반면 자국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한·미 FTA 추진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농산물이 민감품목인 우리나라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낙농제품, 설탕, 땅콩 등과 같은 민감품목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양국의 민감품목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한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관세를 양허함으로써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최근 DDA협상이 부진함에 따라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FTA에서도 다자간 협상에서와 같이 농업부

문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수출국으로서 그동안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월 1일 미국·호주 FTA가 발효되었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

와의 FTA에서 미국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결국 호주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한편 농업부문이 미국보다 현저히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 2004년 8월 5일 서명, 2005년 7월 1일 미 상원 통과)가 추진되었다. 미국이 상이한 농업여건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중미국가와의 FTA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고, 농업부문의 양허내용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한·미 FTA, 즉 농업부문이 취약한 한국과 농산물수출국인 미국의 FTA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미국이지만 우리 농산물 품목이 모두 취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반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품목을 수출해 사전 대비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호주 FTA,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에서 농업부문의 주요 양허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후, 한·미 FTA 추진시 고려하게 될 한·미 양국의 경쟁력 품목을 경쟁력지수를 이용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FTA 체결시 농업부문 협상사례

가. 미국-호주 FTA

1) 농업부문 양허안 주요 내용

미국·호주 FTA에서 호주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이행기간을 두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국은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¹⁾를 적용하였는데, 쇠고기, 낙농제품, 땅콩, 담배, 면화 등의 민감품목에 대해서 관세인하 대신 TRQ를 적용하였다. TRQ 적용기간도 최장 18년에 걸쳐 증량하도록 한 후 TRQ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대다수 품목의 경우 17년에 걸쳐 TRQ가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낙농제품은 17년까지 쿼터를 증량해나가며 이후에도 TRQ를 계속 운용하기로 하였다. 쇠고기의 경우는 18년까지 TRQ를 증량하고 19년차부터 철폐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

1)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제도이다.

었다.

또한 미국은 수입급증에 따른 미국내의 가격하락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농업긴급구조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발동가격 이하일 경우 농업긴급구조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농업긴급구조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양파, 마늘, 토마토(가공제품), 아스파라거스, 배 등 원예작

물 33개 품목과 쇠고기 6개 품목(HS 02011050, 02012080, 02013080, 02021050, 02022080, 02023080)이다.

2) 평가

미국·호주 FTA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호주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반면, 미국의 즉시 관세철폐품목은 농산물 전체 품

표 1. 미국 주요 품목의 TRQ 적용

품 목	TRQ 적용 내용	TRQ 지속여부
쇠고기	이행 2년차부터 18년차까지 2년마다 5천 톤씩 증량	19년차부터 철폐
크림 및 아이스크림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씩 증량	18년차부터 6%씩 복리 증량
농축우유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씩 증량	18년차부터 6%씩 복리 증량
버터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3%씩 복리 증량
무지방분유 및 탈지분유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3%씩 복리 증량
기타 분유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4%씩 증량	18년차부터 4%씩 복리 증량
기타 낙농제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씩 증량	18년차부터 6%씩 복리 증량
치즈		
체다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3%씩 복리 증량
아메리칸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3%씩 복리 증량
스위스형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5%씩 증량	18년차부터 5%씩 복리 증량
유형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5%씩 증량	18년차부터 5%씩 복리 증량
기타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5%씩 증량	18년차부터 5%씩 복리 증량
땅콩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철폐
담배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철폐
면화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	18년차부터 철폐
아보카도	이행 2년차부터 17년차까지 10%씩 증량	18년차부터 철폐
Goya 치즈	이행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5%씩 증량	18년차부터 철폐

자료: "Annex 2-B Schedule of United States General Notes".

2) 한국무역협회(2004)

목 수의 약 66%에 그친 점이다.²⁾ 미국은 즉시 관세철폐 대신 TRQ를 적용하여 민감품목을 보호하였고, TRQ 적용기간도 최장 18년까지 길게 잡았다. 특히 낙농제품의 경우는 TRQ 적용 이후에도 TRQ를 계속 유지시켜나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FTA에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쇠고기와 낙농제품에 대한 TRQ 증량폭을 적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즉 호주산 설탕에 대한 수입 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미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였다. 전반적으로 FTA로 인한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그리 크지 않아 호주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미국 농산물의 대호주 수출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은 호주에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한 반면, 자국 농업은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다. 미국은 호주처럼 농업경쟁력이 강한 국가와의 FTA에서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나.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 (CAFTA-DR)

1) 농업부문 양허안 주요 내용

미국·중미³⁾·도미니카공화국 FTA에서의 농산물 주요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관세철폐기간을 대부분 15년으로 설정하였고 쌀과 낙농제품과 같은 민감품목의 경우는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설탕, 코스타리카의 신선 감자와 신선 양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흰 옥수수는 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미국가들의 과일 및 견과류 중 오렌지를 제외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체리, 호두, 아몬드 등은 모두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중미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⁴⁾ 그러나 미국은 쇠고기의 쿼터 외 관세(out-of-quota)⁵⁾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하였다.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중미국가들과 도미니카공화국이 20년에

3)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4) 다만 도미니카공화국만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TRQ를 1,1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확대하도록 하였다.

5) 할당관세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이다. 이러한 제도는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내 물품의 수입시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TRQ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카리브 연안지침(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⁶⁾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중미국가들의 낙농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 민감품목인 땅콩의 경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산 땅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반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5~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땅콩버터의 관세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이 즉시 철폐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CBI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콩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에 대해서 미국은 관세(100%를 초과하는 쿼터 외 관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하였다.⁷⁾ 그러나 중미국가들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하여 관세인하로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관세인상을 허용하였는데, 미국은 낙농제품, 땅콩, 땅콩버터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 평가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에서 미국은 중미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FTA를 추진하였다. CBI에 의해 중미국가들의 대다수 품목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어 미국은 이미 중미국가들의 수출품에 개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미국가와의 FTA는 이미 무관세로 개방되고 있는 품목이 많아 미국의 입장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즉 FTA로 인한 미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미국내 설탕 관련 생산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농업생산자는 중미국가와의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중미국가들이 미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 농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들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수출기회를 확대한 반면, 자국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FTA로 인해 중미국가들은 취약한 농업부문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 농업부문의 대부분을 협상에서 제외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긴 이행기간과 TRQ 적용, 긴급구제조치 등을 내세워 중미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6) 미국은 카리브해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지정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7) 미국은 설탕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TRQ를 이행 첫해에 10만 7천톤으로 정하고, 이행 15년 후에는 15만 1천톤으로 늘리며 그 이후에는 매년 2%씩 증량하도록 하였다.

또한 쇠고기, 땅콩 등에 대해서 중미국가들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설탕에 대해서 중미국가들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소량의 TRQ만을 확대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호주와의 FTA에서와 같이 미국 설탕부문의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미 농업 경쟁력 분석

현재 고려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업경쟁력이 높은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농산물 품목을 살펴보고, 반대로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우리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를 경쟁력지수를 통해 알아본다.

가. 교역구조 분석

2003~04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전체 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對美 무역수지는 141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9.6% 증가한 것이다. 그러

나 1차 상품인 농림축수산물의 경우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농산물이 22억 달러, 축산물 2억 8천만 달러, 임산물 1억 6천만 달러, 수산물 5,500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산물에서의 무역적자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농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8.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축산물의 경우는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75.4%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입비중이 높은 쇠고기가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 농산물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1%에서 2004년 29.7%로 증가하였다. 즉 2004년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는 한국 전체 농산물 수입의 거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3%에서 2004년 11.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 주요 對美 수출품목은 면류, 꿀 및 로열젤리, 연초류 등으로 가공식품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면류가 5,9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꿀 및 로열젤리는 전년대비 196%나 수출이

8) 중미국가들은 이행 첫해에 10만 7천 톤의 설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연간 설탕소비량의 1~1.2%에 불과한 양이다. 이행 15년 이후에도 중미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설탕수입은 미국 전체 소비의 1.7% 이하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 곡류, 두류, 과일류 등으로 이 중 사료가 약 8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에는 가축육류가 9억 달러로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로 2004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83.8% 수입이 감소하였다.

나. 경쟁력 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농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농산물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농산물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 농산물 수입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력이 높은 미국 농산물이 어떤 품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농업보다 취약한 한국 농업이라 하

더라도 농산물 품목이 모두 취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와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를 사용하여 한·미 양국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 국가의 품목별 비교우위 정도를 각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비중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⁹⁾ RCA 지수가 1보다 크면(작으면) 그 품목의 수출에서 비교우위(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무역특화지수는 양자적인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의 국제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하고자

표 2. 對美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체	34,219	24,814	9,405	42,849	28,783	14,066
농산물	188	1,577	-1,389	217	2,413	-2,196
축산물	22	1,160	-1,138	53	333	-280
임산물	8	151	-143	7	169	-162
수산물	80	153	-73	81	136	-55

자료: KOTIS(MTI 2단위)

9) $RCA_j^k = (X_j^k/X^k)/(X_j/X)$

(X_j^k = j국의 k품목 수출액, X^k = k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액, X_j = j국의 전 산업 수출액, X = 산업의 세계 전체 수출액)

10) 이창수 외(2004)

할 때 사용된다.¹¹⁾ 한국(미국)이 상대적으로 수출(수입)지향적일수록 $1(-1)$ 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수입(수출)지향적일수록 $-1(1)$ 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¹²⁾

본고에서는 UN의 COMTRADE 자료를 이용해 HS 품목분류 24류까지의 HS 6단위 704개 품목에 대해 RCA 지수와 TSI를 사용하여 한·미 양국 농산물 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RCA 지수가 0에 가깝거나 0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RCA 지수는 대부분 1에 가깝거나 1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농산물은 비교열위품목이 많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반면, 미국의 농산물은 비교우위품목이 많고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RCA가 1 이상(2004년 기준)으로 대세계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미국이 238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35개 품목에 불과하였다. 이 중 RCA가 5 이상으로 아주 높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미국이 18개 품목, 한국이 9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은 TSI가 -1 에 가깝거나 -1 인 품목

표 3. 주요 對美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수출 품목	2003년	2004년	수입 품목	2003년	2004년
면류	51,986	59,357	사료	164,582	810,422
꿀 및 로열젤리	14,927	44,213	곡류	279,199	408,939
로열젤리	13,182	42,767	밀	262,294	275,719
			옥수수	8,881	100,405
연초류	27,415	36,406	두류	325,205	376,925
제조담배	27,415	36,406	대두	322,942	374,317
과실류	11,993	15,996	과실류	131,095	157,592
배	11,822	15,441	오렌지	109,367	130,853
소스류	12,233	13,422	가축육류	904,523	146,774
			쇠고기	886,778	103,233
사탕과자류	11,433	13,394	꿀 및 로열젤리	85,552	91,852
비스킷	8,466	9,113		85,203	91,233
주류	11,537	12,298	음료	60,810	53,862
음료	9,888	11,835	채소류	53,812	52,439

자료: KOTIS(MTI 4, 6단위)

11) 이창수 외(2004)

12) X_{ij}^* , M_{ij}^* 를 각각 i 국(한국)의 j 국(미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다고 할 때, $TSI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이 많아 對美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TSI가 1에 가깝거나 1인 품목이 많아 對韓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美 TSI가 수출지향성을 보이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108개이고, 미국의 對韓 TSI가 양(+)의 값을 가지는 품목은 368개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대세계 RCA가 높아($RCA > 5$)¹³⁾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 중 한국에 대해 수출지향성(수출특화)이

높은($0 < TSI \leq 1$) 품목을 추출하였다(표 4 참고). 이 품목들은 주로 견과류, 곡류, 두류, 박류 등으로 미국에 비교우위, 한국에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다.

한편 한국의 농산물은 미국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해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대세계 RCA가 높아($RCA > 1$)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 중 미국에 대해 수출지향성(수출특화)이 높은($0 < TSI \leq 1$) 품목을 추출하였다(표 5 참고). 이러한 품

표 4. 미국의對韓 경쟁력 품목(수산물 제외)

HS 6단위	품목 명	미국의 대세계 RCA		한국의 대세계 RCA		미국의對韓 TSI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070940	샐러리(샐러리아 제외, 신선, 냉장)	3.47	5.94	0.00	0.00	-	1.00
080211	아몬드(탈각하지 않았으며 신선, 건조)	8.53	8.34	0.00	0.00	1.00	1.00
080212	아몬드(탈각했으며 신선, 건조)	6.63	7.57	0.00	0.01	1.00	0.98
080221	헤즐너트, 필버트(탈각하지 않았으며 신선, 건조)	5.46	5.68	0.00	0.00	-	-
080231	호도(탈각하지 않았으며 신선, 건조)	4.73	5.26	0.00	0.00	-	-
100590	옥수수(종자용 제외)	4.59	5.54	0.00	0.00	1.00	1.00
100700	수수	7.61	7.86	0.00	0.00	0.20	1.00
110423	가공한 옥수수	7.91	7.41	0.00	0.00	1.00	1.00
120810	대두의 분과 조분	4.06	5.97	0.00	0.00	1.00	1.00
151221	면실유(조유)	5.33	7.56	0.00	0.00	-	-
151521	옥수수유(조유)	6.87	5.63	0.00	0.00	1.00	1.00
170219	기타, 유당과 유당사탕	6.81	7.03	0.00	0.00	1.00	1.00
230220	쌀의 겨, 미강, 기타 유사한 박류	6.09	6.25	0.16	0.10	-	1.00
230310	전분박, 기타 유사한 박류	7.01	6.50	0.00	0.00	-	1.00
230330	양조박, 증류박	5.92	5.92	0.02	0.02	1.00	1.00
230690	기타 오일케이크와 유박	3.19	6.00	0.00	0.00	1.00	0.89

자료: UN COMTRADE를 이용해서 계산.

13) 미국의 대세계 RCA가 1이상인 품목이 238개로 너무 많아 기준을 $RCA > 5$ 로 정하였다.

목들은 주로 인삼, 가공식품류, 소스류(간장), 주류 등이다. 특히 한국에 비교우위, 미국에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2004년)은 고추류, 밤, 한천(우뭇가사리 가공품), 캐비아, 기타 파스타, 조제저장채소, 간장, 주류 등이다. 인삼의 경우(2004년)는 미국의 RCA 지수가 1.28로 비교우위품목이나 한국의 RCA 지수는 6.42로 세계시장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서도 RCA 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4. 한·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은 자국 농업보다 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FTA에서 전통적으로 민감품목인 설탕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낙농제품, 땅콩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대신

표 5. 한국의 對美 경쟁력 품목(수산물 제외)

HS 6단위	품목 명	한국의 대세계 RCA		미국의 대세계 RCA		한국의 對美 TSI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070960	고추류(신선, 냉장)	0.69	1.05	0.45	0.84	-	1.00
080240	밤(신선, 건조)	9.58	5.85	0.02	0.03	1.00	1.00
121120	인삼(신선, 건조)	5.08	6.42	1.86	1.28	0.99	1.00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8.59	7.52	0.42	0.46	1.00	0.99
130231	한천	2.42	2.91	0.07	0.13	0.41	0.25
130239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10	1.05	1.09	1.06	0.50	0.49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43	1.23	0.35	0.52	1.00	0.99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	6.47	5.81	0.15	0.18	0.71	0.93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47	1.23	0.26	0.35	0.90	0.87
190230	기타 파스타	7.61	6.09	0.78	0.61	0.99	0.99
200590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초산처리한 것과 냉동한 것 제외) 채소 혼합물 포함	2.32	2.26	0.39	0.36	0.86	0.78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과피, 식물의 기타 부분	0.48	1.07	0.12	0.17	0.51	0.23
210310	간장	1.05	1.08	0.89	0.86	0.84	0.83
220600	발효주(사과술, 배술, 미이드 등),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물	1.80	1.46	0.73	1.21	0.78	0.93
220890	기타 에틸알코올(알코올분 80도 미만), 리크류, 주정음료	2.27	3.21	0.25	0.33	0.98	0.96

자료: UN COMTRADE를 이용해서 계산.

TRQ를 적용하였으며, 관세철폐 대상품목은 긴 이행기간을 갖도록 추진하였다. 결국 미국은 호주와 같이 농업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FTA에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 설탕과 같은 민감품목을 예외로 남겨두고 나머지 품목도 TRQ를 이용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이끌어냈다. 반대로 미국보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 중미국가들이 농업부문의 대부분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없이 모든 품목의 개방을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으로 양보하는 데 그쳤다.

미국·호주 FTA와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에서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은 양허대상에서 예외를 두거나 최소한의 TRQ 증량만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점이다. 즉 미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농업경쟁력 정도와는 상관없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관세인하나 TRQ 증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에는 관세인하 대신 TRQ를 적용하고 이행기간을 길게 잡도록 하고 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미국이,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에서는 중미국가들과 도미니카공화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 모두 상대국에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한 반면 자국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미국가와의 FTA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상당수의 농산물이 민감품목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도 낙농제품, 설탕, 땅콩 등과 같은 민감품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민감품목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는 미국이 자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예외품목 없이 모든 품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이다. 또한 미국·호주 FTA는 호주가 농산물 전체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반면, 미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수의 66%만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인 설탕을 예외품목으로 둔 사례이다. 한·미 FTA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미국의 FTA 추진시 농업부문의 협상결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추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국의 민감품목

을 선정해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한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관세를 양허함으로써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즉각적인 관세인하보다는 TRQ를 활용하고, 관세인하시에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민감품목에 대해서 농업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미국내 가격하락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하여 FTA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있다. 특히 인삼, 가공식품류, 소스류(간장), 주류 등의 품목들은 FTA 체결시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이 품목들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인 곡류, 견과류, 두류, 박류 등은 FTA 체결시 우리나라로의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창수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소관 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미국, 중미 FTA와 사탕산업 문제」.
- 한국무역협회, 2004, 「미국-호주 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소.
- USDA, 2004, *U.S.-Australia - Commodity Fact Sheet*.
- _____, 2005, *CAFTA-DR - Overall Agriculture Fact*

Sheet.

USTR, 2004, *Final Text of the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_____, 2004,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_____, 2004, "The Dominican Republic - Central Americ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